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9. 5. 14.

개정 2025. 5. 7.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성

제3조(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제3조 제3항의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해임)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3장 운영

제6조(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소집을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4장 권한 및 의무

제10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부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 여부
 - (6) 외부감사인 선임승인
 -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
요한 사실의 보고 · 수령
 -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9)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10) 법령 및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11)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②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한 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감사수행 후 감사실시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상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이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장 기타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5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내부감사부서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지원조직(이하, ‘내부감사부서’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내부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2. 감사보고서 검토 지원

3. 감사인 선정 및 평가 지원

4. 감사위원회 소집통지,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 정리, 의사록 작성, 부의 안건의 사후 관리 등

5. 제11조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지시한 업무

6.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위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3. 그 밖에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지원조직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위 제3자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17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2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 ·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19. 5. 14.)

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5. 7.)

이 규정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